

제 201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거 창 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4~
----------	-------

제출일자 : 2014. 4.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월성 청소년 수련원내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 준공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하여 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국민여가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국민여가캠핑장

나. 위 치 :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청소년수련원 내)

다. 규 모

구 분	캐 빈 하우스	방갈로	야영 데크	방문자 센터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진입 도로	기타
면적 (수량)	4동 (42.61㎡) (170.44㎡)	3동 (31.53㎡) (94.59㎡)	14동 (5×5)	1동 (53.46㎡)	1동 (76.33㎡)	1동 (72.80㎡)	200m	부대 시설

※ 부대시설 :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발전 시설 등

라. 사업내용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마. 대상사무

- 시설 : 국민여가캠핑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운영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바.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사. 수탁자격

- 경상남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자. 예산지원 : 없음(캠핑장 사용료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국민여가캠핑장을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캠핑장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5월초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5월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5월말
- 위탁계약 체결 : 5월말
- 종사자 채용 : 6월초
- 개관운영 : 6월중

다.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라. 관계법령

- 거창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운영 계획

국민여가캠핑장 준공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I 위탁근거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7조

II 시설현황

- 사업위치 : 월성청소년 수련원(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내
- 규 모

구 분	캐 빈 하우스	방갈로	야영 데크	방문자 센터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진입 도로	기타
면적 (수량)	4동 (42.61㎡) (170.44㎡)	3동 (31.53㎡) (94.59㎡)	14동 (5×5)	1동 (53.46㎡)	1동 (76.33㎡)	1동 (72.80㎡)	200m	부대 시설

※ 부대시설 :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발전 시설 등

- 사 업 비 : 2,160백만원(국비 1,000, 도비 300, 군비 860)
- 주요 부대 시설
 - 물품구입(85,000천원) :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소모품 등
 -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축(5,000천원)
- 운영예산 : 없음(캠핑장 사용료로 운영)

Ⅲ 시설연혁

- 1997.10.26 공공용지 입지승인(거창 청소년 수련관)
- 2010.10.15 자체 투융자 심사
- 2010.10.20 2011년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지원 대상 예비선정
- 2011.01.18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실 협의)
- 2011.09.02 국민여가조성사업 문제점보고((주민생활지원실 협의)
- 2011.11.17 공사착공
- 2013.01.25 시공사부도로 계약해지
- 2013.03.11 공사 기성 타절
- 2013.07.31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세입조치)
- 2013.10.22 잔여공사 착공
- 2014.05.02 공사 준공(예정)

Ⅳ 수탁자 선정 방침

-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유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보장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시 재공고

Ⅴ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이내(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시설 : 국민여가캠핑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운영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수탁기관 모집 : 공개모집
 - 공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지
- 신청자격 :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IV 향후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014. 5월초
- 접수 : 2014. 5월초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14. 5월 중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
- 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14. 5월말
 - 심의내용 : 공모에 응모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에 따라 심사)
- 위·수탁 계약체결 및 민간위탁금 교부 : 2014. 5월말
- 전문인력 및 근로자 채용 : 2014. 6월초순
- 개관운영 : 2014. 6월중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